

채용직무 설명자료

채용분야 NCS 분류 체계	사무보조인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3. 금융·보험	01. 금융	01. 금융영업	01. 창구사무
기관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충북 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통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지원 업무 수행 ◦ (사고관리) 부실발생 기업에 대한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 조치 업무 수행 ◦ (채권관리) 금융기관 등에 보증채무이행,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 ◦ (기본재산 관리) 예치금, 출연금 등 기본재산의 금융회사 예치 및 운용 ◦ (기업지원) 재무 등의 컨설팅 지원 및 창업교육 지원, 지자체 정책자금 추천 업무 ◦ (경영지원) 자산관리, 전산관리, 안전관리 등 경영지원 업무 수행 			
직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응대(서류접수 등), 무방문 기한연장, 고객 전화응대, 보증채무이행청구 심사 등 신용보증 및 재기지원 관련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직무 수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방문 기한연장: 고객과의 무방문 기한연장 관련 유선통화, 보증료 입금확인, 금융회사 통지, 보증해지, 제수입금 수납, 채무보증정보 등록 및 제반업무에 수반되는 관련 서류 편철 ◦ 신용보증(보조): 보증상담 안내, 내방고객 및 전화 고객 응대 등의 신용보증 업무보조 ◦ 자료 편철: 업무처리 완료된 채권 서류 편철, 반송서류·보증 실행 업체 관련 서류 및 채권 편철, 월별 정리 편철 ◦ 고객응대: 지점위치, 상담 서류 안내, 각종 신용보증업무 관련 보조 ◦ 보증채무이행청구 심사, 은행원과의 협조, 재보증 이행청구 등의 재기지원 관련 업무보조 ◦ 문서 등의 기록물 및 기타 데이터 관리: 문서 수·발신, 정리, 보관, 보존, 데이터 수집, 분석, 가공, 활용, 보안 관리 			
직업 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정보능력			
직무 수행능력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회계 지식, 사무기기 운용 매뉴얼 ◦ 문서관리 규정, 업무처리 규정, 보안 규정, 조직도, 직제 규정, 근태, 출장, 교육과 관련된 회사 규정 이해 ◦ 온-오프라인 업무 회신 요령, 내용 공지 요령, 공지 문서 종류와 기준 ◦ 서류 시스템 이용 및 기록물 관리 방법, 전자정보 관리 방법 ◦ 신용보증제도의 이해 ◦ 고객 요구사항 분석 및 적용 방법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능력 ◦ 금융거래 기초자료의 이해 및 분석력 ◦ 사내 인트라넷, 전자정보시스템 활용 기술 ◦ 인터넷 검색 및 객관적 자료·정보 수집 능력 ◦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및 기타 업무용 소프트웨어 활용 기술 ◦ 내·외부 규정 및 기준 해석 능력, 신용보증채권 확인 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지향적 태도 ◦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목표의식 ◦ 열정과 끈기있는 태도 ◦ 정확한 업무처리 및 세밀한 일처리 태도 ◦ 규정 및 원칙 준수 및 성실한 태도 ◦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태도 		

결 격 사 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바. 삭제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